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제정 2017. 10. 17 조례 제2864호
일부개정 2021. 9. 29 조례 제33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2.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예정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을 각각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

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국장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안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5조제2호에 따른 표창장 또는 제7조에 따른 상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29>

③ 삭제 <2021. 9. 29>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수여대장 등재) 포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수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9 조례 제3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안 양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안 양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안 양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1) 성명	(한글)										(한자)									
(2)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외국인에 한함)																				
(5) 주소																				
(6) 직업					(7) 소속															
(8) 직위					(9) 등급(직급·계급)					(10) 공적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50자 내외)					(12) 공적분야															
추천자																				
(13) 소속					(14) 직위															
(15) 직급					(16) 성명		(인)													
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7) 연 월 일	(18) 이 력	(19) 연 월 일	(20)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기록)			
(21) 연 월 일	(22) 내 용	(23) 연 월 일	(24) 내 용
(25) 공 적 사 항			

공 적 기 간 산 정 조 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공적기간 산정내역

근무기관	직 위	근무기간	공 적 관 련 업 무	공적기간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 ○ ○ ○ ○ ○ 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 포상구분:

☐ 심사대상자

주소 또는 소속	성명	공적내용	심사결과	
			가	부

위와 같이 의결함

년월일

안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부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번 호	연 월 일	수 상 자			종 별	공적개요	비 고
		소속(주소)	직 위	성 명			